

제31권: 2006. 4. 11.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1. 미국 양허안 분석의 필요성	1
2. NAFTA에서 미·멕시코 양허 내용	2
3. 미국·호주 FTA	8
4. 미국·칠레 FTA	11
5. 시사점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02-3299-4246 skchoi@krei.re.kr
허주녕 전문연구위원 02-3299-4171 knuhjn@krei.re.kr
박성진 연구원 02-3299-4297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양허안 분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외교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국(지역)과의 FTA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FTA 추진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개방적 통상정책 시행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 유치 확대, 수출 시장 개척,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등이다. 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FTA의 세계적 확산 및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FTA 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대상 국가는 20여 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FTA 대상국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국가는 미국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FTA는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우리는 미국이 맺은 FTA에서 미국의 양허 내용과 상대국의 미국에 대한 양허 내용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맺은 대표적인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협정을 체결한 칠레 및 호주와의 FTA를 분석하였다. 양허안 작성 및 협상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양허를 하는 것이 우리 농업에 유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상품양허 내용과 방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NAFTA에서 미·멕시코 양허 내용

2.1. 미국의 관세양허

북미자유무역협정¹⁾(NAFTA)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상품무역과 관련 하여 역내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FTA)의 합의 내용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NAFTA 협정문 제7장은 농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업협정문 규정에는 다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농업규정이 우선한다고 되어있다.⁴⁾

NAFTA의 농업협정문에서 농산물 시장접근 방식은 공통적으로 관세철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멕시코·미국, 캐나다·멕시코 간의 농산물 시장접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⁵⁾ 캐나다와 미국의 농산물 시장접근 방식은 캐나다·미국 FTA 규정을 적용한다.⁶⁾

NAFTA 농업협정문 부속서 제 703.3조에 각 체약국이 자국의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또한 NAFTA에서 농업 특별 세이프가드는 관세율쿼터⁸⁾의 형태

1)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 1994년 1월 출범, 내용은 향후 5-15년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 원산지 규정 강화, 지적소유권 보호, 역내투자 촉진 등이다.

2) NAFTA 제302조 제2항,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분석』, 2003.

3) NAFTA 부속서 302.2(4, 12).

4) NAFTA 제701.2조.

5) NAFTA 부속서 703.2(A), NAFTA 부속서 703.2(B),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분석』, 2003.

6) NAFTA 부속서 702.1.

7) 관세화에 따른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 세계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익급증 때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 농업부문에서의 특별 세이프가드는 관세인상만은 허용하되 상대체약국에 홍보할 의무는 있으나 보상의무는 면제, 발동요건은 수입 물량기준과 수입 가격기준 두 가지가 있다.

8) 관세율 쿼터(TRQ)는 특정 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

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특별 세이프가드 품목으로는 토마토(체리토마토 제외), 양파, 수박 등이 해당된다.

HS 8단위 기준으로 총 1,303개의 품목 가운데 기존의 무관세 품목은 271개(전체의 20.8%)이다. FTA에서 일반적인 관세철폐 범주에 속하는 9년 관세철폐(9년간 관세 인하를 이행하여 10년째 되는 해에 무관세가 되는 것을 여기서 9년 철폐로 명명하였다.) 품목은 모두 989개로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032개 품목의 95.8%(전체의 75.9%)에 달한다. 나머지 43개 품목은 15년차에 관세가 철폐된다(14년 철폐). 따라서 **미국이 멕시코에 양허한 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다.**

관세가 있는 품목 가운데 즉시철폐로 양허한 품목은 685개(전체의 52.6%)이다. 4년 철폐 품목은 108개, 9년 철폐 품목은 196개이다. 쿼터제공 조건으로 14년 철폐 품목은 토마토, 가지, 고추 등 채소류 7개 품목이다. 설탕 및 시럽 16개 품목은 15년차에 관세가 철폐되지만 여러 가지 쿼터 제공 방식 등이 적용된다.

미국이 멕시코에 양허한 농산물 개방계획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15년차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품목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신선 또는 건조 상태의 채소 및 과채류(배추, 오이, 가지-신선 기타, 아스파라거스, 양파, 기타채소혼합물, 멜론), 땅콩, 오렌지주스, 일부 비알콜음료와 설탕 관련 제품이다. 특히 설탕 관련 제품은 쿼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15년 차 관세철폐 다음으로 시장개방 기간이 긴 10년 차 관세철폐 품목은 일정량의 쿼터가 주어진 채소류(토마토-신선/냉장, 양파샬롯-신선/냉장, 가지-신선/냉장, 고추류-신선/냉장/기타, 기타채소류-신선/냉장)와 쿼터가 주어지지 않은 채 10년간 철폐하는 조건의 유제품(밀크와 크림-미농축/무가당, 분유-기타, 요구르트-기타, 치즈), 채소류(상추-신선/기타, 샐러리-기타), 과실류(아보카도, 구아바, 망고-기타, 레몬, 라임, 파파야, 딸기), 곡물류(밀-듀럼, 벼, 찹쌀, 찰현미, 쇠미 등이 있다.

즉시 철폐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11류(38개중 31개), 16류(26개중 26개), 22류(67개중 58개) 등이다. 즉시철폐 품목 수가 많은 것은 HS 2류(52개), 7류(93개), 8류(68개), 11류(34개), 15류(48개), 20류(76개), 22류(58개) 등이다.

표 1. NAFTA에서 미국의 대멕시코 농산물 양허 유형별 양허 현황

	A	B	C	D	C+	Ctq	Sug	합계
01류	10	-	-	10	-	-	-	20
02류	52	-	-	19	-	-	-	71
04류	13	-	64	2	-	-	-	79
05류	5	-	-	6	-	-	-	11
06류	21	1	-	6	-	-	-	28
07류	93	46	25	15	8	7	-	194
08류	68	12	15	20	3	-	-	118
09류	11	-	1	32	-	-	-	44
10류	10	1	6	4	-	-	-	21
11류	31	1	-	6	-	-	-	38
12류	22	1	-	29	2	-	-	54
13류	4	3	-	8	-	-	-	15
14류	5	1	-	8	-	-	-	14
15류	48	8	1	13	-	-	-	70
16류	26	-	-	-	-	-	-	26
17류	15	1	3	1	-	-	12	32
18류	10	-	2	5	-	-	2	19
19류	12	1	5	9	-	-	-	27
20류	76	25	43	10	4	-	-	158
21류	17	-	5	6	1	-	2	31
22류	58	1	5	1	2	-	-	67
23류	16	-	2	11	-	-	-	29
24류	9	-	14	1	-	-	-	24
29류	2	-	-	-	-	-	-	2
33류	7	-	-	11	-	-	-	18
35류	13	-	-	3	-	-	-	16
38류	2	-	-	-	-	-	-	2
41류	-	-	-	12	-	-	-	12
43류	1	-	-	9	-	-	-	10
50류	1	-	-	3	-	-	-	4
51류	24	6	-	6	-	-	-	36
52류	1	-	5	1	-	-	-	7
53류	2	-	-	4	-	-	-	6
합계	685 (52.6)	108 (8.3)	196 (15.0)	271 (20.8)	20 (1.5)	7 (0.5)	16 (1.2)	1,303 (100.0)

- 주 1) A: 1994년 즉시 철폐. B: 1994년부터 5년간 균등 감축(1998년 철폐) - 4년 철폐.
 C: 1994년부터 10년간 균등 감축(2003년 철폐) - 9년 철폐. D: 기존의 무관세 품목.
 C+: 1994년부터 15년간 균등 감축(2008년 철폐) - 14년 철폐. Ctq: 쿼터 조건부 1994
 년부터 10년간 균등 감축(특정 농산물) - 9년 철폐. Sug: 설탕과 설탕제품에 대한
 특별 취급(일정 조건에서 15년간 관세철폐) - 14년 철폐.
 2) 여기서 4년 철폐라 함은 4년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5년차에 무관세가 됨을 의미.
 3) HS 8 단위 기준이며,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2.2. 멕시코의 관세양허

멕시코는 NAFTA 체결 시 설탕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에 공통으로 관세를 양허하였다. 선택한 양허방식은 모두 12개에 달하는 복잡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관세의 즉시철폐에서 예외 및 수입 금지까지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관세철폐 기간이 가장 길게 설정된 14년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은 설탕과 설탕제품으로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양귀비 씨 등 마약성 농산물은 수입 금지 품목이다. 육류와 유제품을 중심으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설정하였다. 멕시코는 일부(HS 8단위 기준 7 품목) 마약성 품목의 수입 금지 이외에 74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두었다.

표 2. NAFTA에서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유형

범주	철폐 계획
A	1994년부터 관세 즉시 철폐
B	1994년부터 5년간 균등 감축(1998년 철폐): 4년 철폐
C	1994년부터 10년간 균등 감축(2003년 철폐): 9년 철폐
D	기존 무관세 품목
Ctq	쿼터 조건부 1994년부터 10년간 균등 감축: 9년 철폐
Cag	1994년부터 매년 4%씩 6년간 균등감축(1999), 나머지 76%는 2003년까지 4년간 균등 감축: 9년 철폐
C+ag	1994년부터 매년 4%씩 6년간 균등감축(1999), 나머지 76%는 2008년까지 9년간 균등 감축: 14년 철폐
Ex	관세 철폐 제외(공급관리 품목)
B+	1994년 20%,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균등 10% 감축, 그리고 2001년까지 나머지 30% 감축: 7년 철폐
BP	1997년 20% 감축, 1998년 10% 감축 그리고 1999년 나머지 70% 감축: 5년 철폐
Sug	설탕과 설탕제품에 대한 특별 취급(쿼터 제공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15년간 관세철폐) : 14년 철폐
Pro	수입 금지 품목

주: “관세 철폐”의 정의는 필자가 정한 것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행 기간을 의미함.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관세양허 방식은 WTO나 FTA 협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해진 기간, 일정률 감축이 일반적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에서 일정률 감축 이외에 이행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구사하였다. 쿼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정률 감축방식을 택하거나 설탕의 경우와 같이 쿼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행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였다.

멕시코의 무관세 품목은 전체의 8.6%인 89 품목(HS 8단위 기준)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즉시철폐 범주에 전체의 41.6%인 433 품목을 넣어 미국의 즉시철폐 비율 52.6%보다 낮게 양허하였다. 4년간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의 비율은 8.8%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균등한 감축률로 관세가 철폐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감축 방식에 따라 7년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1개, 5년 관세 철폐품목은 2개에 불과하다. 9년 관세철폐 품목은 325개로 전체의 31.3%이다. 여기에는 쿼터를 제공하는 조건이 부가된 16개 품목과 균등 감축이 아닌 10개 품목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무관세 품목을 포함하여 9년 관세철폐 품목은 모두 942개(전체의 90.6%)이다.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이거나 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모두 98개이다. 이들 품목은 14년 관세철폐 품목 17개, 관세철폐예외 품목 74개, 수입 금지 품목 7개 등이다. 14년 관세철폐 품목은 주로 당류에 속하는 것이 많으며,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가금육과 낙농품이 많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수입 금지 품목을 포함하여 모두 81개로 전체의 7.8%이다.

멕시코의 수입 금지 농산물은 양귀비 씨, 아편 등 마약성 농산물 7품목이다. 관세철폐 기간이 긴 14년 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일정한 쿼터가 제공되는 설탕제품(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정제당, 당류 등), 옥수수과 강낭콩(멕시코의 주요 곡물)이다. 관세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축산물이 주를 이루며, 축산물 가운데에서도 가금육과 낙농제품이 많다. 세부 품목으로는 종계, 기타 닭고기, 기타 가금육, 기타 소시지, 기타 동물간장, 미농축 및 미첨가 우유, 기타 분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기타 계란, 아이스크림, 기타 조제식품, 카세인 등이다.

표 3. NAFTA에서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 유형별 현황

	A	B	C	D	Ctq	Cag	C+ag	EX	B+	BP	Sug	Pro	계
01류	10	1	5	9	2	-	-	4	-	-	-	-	31
02류	1	3	23	7	9	3	-	14	-	2	-	-	62
04류	1	-	1	-	-	-	-	45	-	-	-	-	47
5류	12	-	1	-	-	-	-	-	-	-	-	-	13
6류	23	-	-	6	-	-	-	-	-	-	-	-	29
7류	97	2	-	3	2	1	1	-	-	-	-	-	106
8류	45	14	6	-	1	-	-	-	-	-	-	-	66
9류	30	-	4	-	-	-	-	-	-	-	-	-	34
10류	6	1	10	2	-	2	1	-	-	-	-	-	22
11류	-	-	35	-	-	2	-	-	-	-	-	-	37
12류	11	2	12	55	-	-	-	-	-	-	-	3	83
13류	29	1	1	1	-	-	-	-	-	-	-	4	36
14류	12	-	1	-	-	-	-	-	-	-	-	-	13
15류	16	2	59	-	-	2	-	-	-	-	-	-	79
16류	-	-	11	-	-	-	-	4	-	-	-	-	15
17류	-	-	12	-	-	-	-	-	-	-	12	-	24
18류	6	-	4	-	-	-	-	-	-	-	1	-	11
19류	1	10	9	-	-	-	-	-	-	-	-	-	20
20류	41	12	13	-	2	-	-	-	-	-	-	-	68
21류	6	6	13	-	-	-	-	2	-	-	2	-	29
22류	9	20	14	-	-	-	-	-	1	-	-	-	44
23류	6	9	22	-	-	-	-	1	-	-	-	-	38
24류	-	-	12	-	-	-	-	-	-	-	-	-	12
29류	1	1	-	-	-	-	-	-	-	-	-	-	2
33류	25	1	1	-	-	-	-	-	-	-	-	-	27
35류	16	-	1	-	-	-	-	4	-	-	-	-	21
38류	1	1	-	-	-	-	-	-	-	-	-	-	2
41류	9	1	-	3	-	-	-	-	-	-	-	-	13
43류	12	-	-	-	-	-	-	-	-	-	-	-	12
50류	4	-	-	-	-	-	-	-	-	-	-	-	4
51류	3	-	17	2	-	-	-	-	-	-	-	-	22
52류	-	5	4	1	-	-	-	-	-	-	-	-	10
53류	-	-	8	-	-	-	-	-	-	-	-	-	8
계	433 (41.6)	92 (8.8)	299 (28.8)	89 (8.6)	16 (1.5)	10 (1.0)	2 (0.2)	74 (7.1)	1 (0.1)	2 (0.2)	15 (1.4)	7 (0.7)	1,040 (100)

주 1) HS 8 단위 기준. 2)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3. 미국 · 호주 FTA

3.1. 미국의 관세양허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NAFTA 체결시보다 다양한 관세양허 방식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NAFTA 체결시 멕시코에 대한 관세양허 방식으로 7가지를 택하였으나 호주와의 FTA에서는 9가지 방식을 택하였다(C 유형인 7년간 관세철폐 품목은 실제로는 없음). 관세철폐 기간에 있어서 미국은 NAFTA에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철폐는 14년으로 하였고 모든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호주와의 FTA에서 미국의 관세철폐는 최장 17년이 걸리며, 관세철폐 예외 품목도 두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 대한 관세양허는 멕시코에 비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세철폐 방식은 일정률 감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다양한 감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많이 이용된 것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이행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감축률을 적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일정 기간 유예 후 즉시철폐, 일정 기간 유예 후 1년 철폐 등이 있다. 유예기간은 6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하며, 쿼터 제공 방식도 다양하다.

미국과 호주의 FTA에서 미국의 양허대상 농산물은 HS 8단위 기준으로 1,799개이다. 이 가운데 기존의 무관세(D 유형) 품목은 375개로 전체의 20.8%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세철폐 협상 대상 품목은 1,424개였으며, 이 가운데 342개 품목을 제외한 1,082개 품목을 관세철폐 품목으로 양허하였다. 따라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전체 1,799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19.0%이며, 시장개방(관세철폐) 정도는 81% 수준이다.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양허유형은 즉시철폐(A 유형) 668 품목(전체의 37.1%), 3년 철폐(B 유형) 157 품목(전체의 8.7%), 9년 철폐(D 유형) 107 품목(전체의 5.9%) 등이다. 그 밖에 일부 포도주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식의

TRQ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10년 관세철폐를 설정한 경우가 있다(포도주 유형. TRQ 제공방식 및 관세 감축 방식은 부표 4 참조). 이러한 포도주 유형에 속하는 품목은 11개 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세철폐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0년 이내의 관세철폐 품목은 1,318개로 전체의 73.3%이다. 17년 관세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관세철폐 방식에 따라 F, G, H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밀크와 크림, 아스파라거스, 기타 밀의 글루텐, 땅콩유와 그 분획물,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토마토, 과일주스 등 모두 139개 품목(전체의 7.7%)이 있다. 17년 철폐 품목 가운데 41개 품목에는 쿼터가 제공된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I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가당연유, 버터, 탈지분유, 기타치즈 등 축산물과 당류, 코코아 분말,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조제식료품, 담배 등 가공 식품이 있다. I 유형에 속하는 342개 품목 가운데 160개 품목은 쿼터가 제공되며, 쿼터가 제공되는 품목은 모두 17년 관세철폐 또는 관세철폐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관세를 장기간 철폐하거나 관세철폐 예외를 설정한 경우에는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유형

유형	철폐 방식
A	협정발효 즉시 철폐
B	협정발효 후 4년간 균등 감축: 3년 철폐
C	협정발효 후 8년간 균등 감축: 7년 철폐
D	협정발효 후 10년간 균등 감축: 9년 철폐
포도주	여러 가지 방식의 쿼터가 제공되는 조건에서 10년 관세 철폐
E	무관세 계속 적용
F	협정발효 후 18년간 연차적 균등 감축: 17년 철폐
G	협정발효 후 6년간 관세 감축유예, 7년차에 기본세율에서 5.6%관세인하 후 12년차까지 연차적으로 5.6%관세인하, 13~17년 차 11.1%관세인하: 17년 철폐
H	협정발효 후 8년간의 관세 감축유예, 9~13년 차 6.7%인하, 14~17년 차 13.3% 인하: 17년 철폐
I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없이 기본세율이 계속 적용: 관세철폐 예외

주: “관세 철폐”의 정의는 필자가 정한 것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행 기간을 의미함.

자료: 미국-호주 FTA 협정문, 2004(<http://www.ustr.gov>).

표 5.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현황

	A	B	D	E	F	G	H	I	포도주	합계
01류	12	1	-	14	1	-	-	-	-	28
02류	43	16	-	19	-	-	20(20)	-	-	98
04류	55	2	8	2	25(1)	-	-	157(99)	-	249
05류	5	1	-	15	-	-	-	-	-	21
06류	19	2	1	6	-	-	-	-	-	28
07류	90	30	23	16	8	-	-	-	-	167
08류	60	16	13	23	4	2(2)	-	-	-	118
09류	13	2	-	33	-	-	-	-	-	48
10류	16	1	-	4	-	-	-	-	-	21
11류	29	3	-	4	1	-	-	-	-	37
12류	24	2	-	31	2(2)	-	-	2	-	61
13류	5	-	-	10	-	-	-	-	-	15
14류	6	-	-	7	-	-	-	-	-	13
15류	28	9	5	16	2	-	-	2(2)	-	62
16류	19	7	1	2	-	-	-	-	-	29
17류	13	2	2	2	15	-	-	32(2)	-	66
18류	12	1	4	6	-	-	-	54(26)	-	77
19류	18	10	2	10	-	-	-	30(14)	-	70
20류	80	33	25	13	29(3)	-	-	3	-	183
21류	19	7	8	9	7	-	-	42(11)	-	92
22류	20	-	2	32	6	-	-	2(2)	11(11)	73
23류	20	1	-	10	-	-	-	4(4)	-	35
24류	9	4	6	19	9(7)	-	-	8	-	55
29류	2	-	-	-	-	-	-	-	-	2
33류	6	1	-	11	-	-	-	-	-	18
35류	8	3	-	3	2	-	-	-	-	16
38류	2	-	-	-	-	-	-	-	-	2
41류	20	-	-	16	-	-	-	-	-	36
43류	-	1	-	6	-	-	-	-	-	7
50류	1	-	-	3	-	-	-	-	-	4
51류	7	2	7	24	-	-	-	-	-	40
52류	5	-	-	5	6(6)	-	-	6	-	22
53류	2	-	-	4	-	-	-	-	-	6
합계	668	157	107	375	117 (19)	2 (2)	20 (20)	342 (160)	11 (11)	1,799 (212)

주 1) HS 8 단위 기준. 2) ()는 쿼터조건하의 관세철폐 품목을 나타냄.
 자료: 미국-호주 FTA 협정문, 2004(<http://www.ustr.gov>).

3.2. 호주의 관세양허

호주는 미국에 대하여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철폐 유형으로 양허하였다.

4. 미국 · 칠레 FTA

4.1. 미국의 관세양허

미국은 칠레와의 FTA에서 농산물 관세양허 유형을 9가지로 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무관세 품목에 대한 무관세 유지, 즉시철폐, 11년 철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설정하지 않았다. 관세철폐 방식도 비교적 단순하여 균등감축, 일정 기간 유예 후 이행구간별 차등 감축 등이 적용되었다. 관세 감축 기간이 최장 11년이고 예외 품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업부문 상품양허에 있어서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미국 · 칠레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유형

유형	내용
A	협정발효 후 즉시 관세철폐
B	협정발효 후 4년 균일 감축: 3년 철폐
C	협정발효 후 8년 균일 감축: 7년 철폐
D	협정발효 후 10년 균일 감축: 9년 철폐
E	협정발효 후 12년 균일 감축: 11년 철폐
F	무관세 품목
G	협정발효 후 1~4년 기본관세, 5년 차 8.3%감축, 6~8년 8.3%감축, 9~12년 16.7% 감축: 11년 철폐
H	협정발효 후 1~2년 관세유지, 3년차부터 8단계 균일감축: 9년 철폐
J	1~7년 기본관세, 8년부터 5단계 균일 감축: 11년 철폐

주: “관세 철폐”의 정의는 필자가 정한 것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행 기간을 의미함.

자료: 미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문, 2003(<http://www.ustr.gov>).

미국은 기존의 무관세 품목이 369개로 전체의 21.3%였으며, 협정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921개(전체의 53.2%)에 달한다. 따라서 발효 즉시 칠레가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3/4에 달한다. 이행 기간이 가장 긴 11년 철폐 대상 품목은 241개로 전체의 13.9%이다.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을 보면, 11년 철폐로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자 한 품목은 주로 육류와 가공식품류이다. 가공식품은 17류부터 22류까지에 속하는 품목으로 주로 11년 철폐 품목에 속한다.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쿼터가 제공되며, 쿼터 제공 품목은 213개이다. 쿼터 제공 품목은 주로 J 유형에 속하는 것(118 품목)으로 11년 관세철폐에 속하는 것이 많다.

표 7. 미국·칠레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현황

	A	B	C	D	E	F	G	H	J	합 계
01류	12	-	-	-	-	11	-	-	-	23
02류	59	9(6)	1	-	-	20	-	4(4)	-	93(10)
04류	143	15	5	7	2	2	-	-	77(77)	251(77)
05류	6	-	-	-	-	11	-	-	-	17
06류	21	1	-	-	-	6	-	-	-	28
07류	96	14	12(1)	6	9	15	3	-	-	155(1)
08류	58	15(1)	10(1)	4	2	24	4(2)	-	-	117(4)
09류	14	-	-	-	-	33	-	-	-	47
10류	17	-	-	-	-	4	-	-	-	21
11류	29	3	-	-	-	6	-	-	-	38
12류	27	-	-	-	2(2)	29	-	-	-	58(2)
13류	4	1	-	-	-	10	-	-	-	15
14류	6	-	-	-	-	8	-	-	-	14
15류	29	8	2	1	3	16	-	-	1(1)	60(1)
16류	26	-	-	-	-	1	-	-	-	27
17류	44	-	1	3	15(15)	2	-	-	1(1)	66(16)
18류	38	-	-	1	12(12)	7	-	-	20(20)	78(32)
19류	38	2	2	2	6(6)	9	-	-	9(9)	68(15)
20류	89	11	29(5)	6	13(4)	12	10	-	-	170(9)
21류	56	1(1)	1	-	15(14)	7	1	-	7(7)	88(22)
22류	27	3(1)	-	-	4	31	7(7)	-	1(1)	73(9)
23류	21	1	-	-	-	12	-	-	2(2)	36(2)
24류	20	2	5	-	9(7)	20	-	-	-	56(7)
29류	2	-	-	-	-	-	-	-	-	2
33류	7	-	-	-	-	11	-	-	-	18
35류	10	2	1	-	-	3	-	-	-	16
38류	2	-	-	-	-	-	-	-	-	2
41류		-	-	-	-	12	-	-	-	12
43류	1	-	-	-	-	9	-	-	-	10
50류	1	-	-	-	-	3	-	-	-	4
51류	7	8	-	-	-	24	-	-	-	39
52류	9	-	-	-	6(6)	7	-	-	-	22(6)
53류	2	-	-	-	-	4	-	-	-	6
합 계	921	96(9)	69(7)	30	98(66)	369	25(9)	4(4)	118(118)	1,730(213)

주 1) HS 8 단위 기준. 2) ()는 쿼터조건하의 관세철폐 품목을 나타냄.
 자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문, 2003(<http://www.ustr.gov>).

4.2. 칠레의 관세양허

칠레는 미국과의 FTA에서 10개 유형으로 농산물 관세를 양허하였다. 즉시철폐에서 11년 철폐까지는 미국과 동일한 방식이나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유예와 유예 이후 감축 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쿼터 제공 품목은 53개이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설정하지 않았다. 쿼터를 제공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11년 관세철폐에 속한다. 일정 기간 유예 이후 관세 철폐에 들어가는 품목의 유예기간은 2년부터 6년까지이며 관세철폐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장 11년이다.

표 8. 미국·칠레 FTA에서 칠레의 농산물 양허유형

유형	내용
A	협정발효 후 즉시 관세철폐
B	협정발효 후 4년 균일 감축: 3년 철폐
C	협정발효 후 8년 균일 감축: 7년 철폐
D	협정발효 후 10년 균일 감축: 9년 철폐
E	협정발효 후 12년 균일 감축: 11년 철폐
F	무관세 품목
G	협정발효 후 1~4년 기본관세, 5년 차 8.3%감축, 6~8년 8.3%감축, 9~12년 16.7% 감축: 11년 철폐
H	협정발효 후 1~2년 기본관세, 3년차부터 8단계 균일 감축: 9년 철폐
O	협정발효 후 2년까지 기본관세 유지, 3년 차 1월 1일부터 관세철폐: 2년 철폐
V	협정발효 후 6년까지 기본관세 유지, 7년 차 1월 1일 3.3% 감축, 8년 차 21.7%, 9년 차 40%, 10년 차 58.3%, 11년 차 76.7% 감축, 12년 차 1월 1일 관세철폐: 11년 철폐

주: “관세 철폐”의 정의는 필자가 정한 것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행 기간을 의미함.

자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문, 2003(<http://www.ustr.gov>).

표 9. 미국·칠레 FTA에서 칠레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현황

	A	B	C	E	G	H	O	V	합계
01류	19	-	-	-	-	-	-	-	19
02류	29	16(6)	-	4	-	4(4)	-	-	53(10)
04류	2	13	24	5	-	-	-	-	44
05류	16	-	-	-	-	-	-	-	16
06류	12	-	-	-	-	-	-	-	12
07류	42	3	18	-	-	-	-	-	63
08류	63	-	-	-	-	-	-	-	63
09류	32	-	-	-	-	-	-	-	32
10류	7	-	2	5	1	-	1	-	16
11류	8	7	-	18	1	-	-	-	34
12류	32	-	14	6	-	-	-	-	52
13류	11	-	1	-	-	-	-	-	12
14류	11	-	-	-	-	-	-	-	11
15류	20	-	-	3	25	-	-	-	48
16류	8	2	3	-	-	-	-	-	13
17류	13	-	-	-	13(13)	-	-	-	26(13)
18류	12	-	-	-	12(12)	-	-	-	24(12)
19류	14	2	-	1	4(4)	-	-	-	21(4)
20류	40	2	4	1	4	-	-	-	51
21류	17	2	-	-	14(14)	-	-	-	33(14)
22류	10	-	-	6	-	-	5	5	26
23류	14	10	-	5	-	-	-	-	29
24류	9	-	-	-	-	-	-	-	9
29류	2	-	-	-	-	-	-	-	2
33류	14	-	-	-	-	-	-	-	14
35류	5	7	-	-	-	-	-	-	12
38류	-	2	-	-	-	-	-	-	2
41류	12	-	-	-	-	-	-	-	12
43류	9	-	-	-	-	-	-	-	9
50류	4	-	-	-	-	-	-	-	4
51류	11	-	-	-	-	-	-	-	11
52류	5	-	-	-	-	-	-	-	5
53류	6	-	-	-	-	-	-	-	6
합계	509	66(6)	66	54	74(43)	4(4)	6	5	784(53)

주 1) HS 8 단위 기준. 2) ()는 쿼터조건하의 관세철폐 품목을 나타냄.
 자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문, 2003(<http://www.ustr.gov>).

5. 시사점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 미국이 상대국에 양허한 내용과 상대국이 미국에 양허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1위 국가이기는 하지만 FTA 체결 시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개방에서 예외로 취급한 점, 둘째, 미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점, 셋째, 농업분야에서 양국 간에 불균형한 형태로 협상이 타결된 경우가 많은 점, 넷째, 관세철폐 방식 및 쿼터 제공 방식 등 양허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 등이다.

미국이 자국의 민감 농산물 보호를 위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호주와의 FTA를 들 수 있다. 호주와의 FTA에서 미국은 전체의 19%인 342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하였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의 대부분은 낙농품 및 설탕 관련제품이다. 예를 들면, 가당연유, 버터, 탈지분유, 밀크와 크림, 버터, 치즈와 커드, 기타 유장 등이다. 그 밖에 설탕 관련 제품(당류, 코코아 분말, 기타 설탕과자)과 담배 등도 대표적인 관세철폐 예외 품목이다. 당류는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NAFTA 체결 시 멕시코에게 수입 금지 품목을 포함하여 모두 81 품목(전체의 7.8%)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는 시장개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약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이 특별히 유의할 부분이다.

미국·칠레 FTA에서 양국은 모두 상호 관세철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국이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상호 불균형한 형태로 협정이 체결된 경우도 있다. NAFTA 체결 시 멕시코는 협상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예외를 얻어냈으나 미국은 관세철폐 품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은 상당수의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호주는 모든 품목을 개방하였다. 이러한 불균형한 형태는 결국 농산품과 공산품(또는 기타 상품교역 분야)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특정 민감 농산물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농산물 또는 비농산

물 분야에서 이를 보상할 만한 양보를 하거나 미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양허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국의 민감품목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세철폐(또는 감축)는 정해진 기간 매년 일정률로 감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이러한 방식 이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관세 감축 방식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관세 감축 방식의 예로 첫째, 일정 기간 유예 후 즉시 또는 점진적 감축, 둘째, 이행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감축률을 다르게 하는 것, 셋째, 쿼터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관세 감축 방식을 적용한 것 등이 있다. 그 밖에 위의 방식들을 다시 결합한 형태도 있는 등 관세 감축 방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도입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국과의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가 NAFTA 협상에서 얻어 낸 것과 유사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관세철폐 대상에 들어갈 품목은 다양한 감축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쿼터를 제공하는 조건 아래 관세 감축을 최소화할 품목과 쿼터보다 관세 감축이 유리한 품목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비슷한 경우가 될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호주, 칠레와의 협상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관세의 완전 철폐나 예외 이외에 부분적인 감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표>

부표 1. NAFTA에서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 유형	품목 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관세철폐	685 (52.6)	소(기타), 닭(기타), 가금류, 쇠고기(도체, 신선, 냉장), 돼지고기(도체, 냉동), 양고기(도체, 신선), 소식용설육, 돼지고기 식용설육, 밀크(비농축, 무가당), 조란, 인모, 돼지털, 절화, 구근류(기타), 감자(종자용), 완두, 콩(냉동), 기타채소류, 감자(냉동), 아몬드, 호두(비탈각), 커피대용물, 밀(메슬린), 옥수수, 조, 곡분(밀, 옥수수, 쌀), 돈지, 우지, 아마인유, 소시지(기타), 사탕수수당, 당밀, 베이커리조제용품, 박류(채소류/기타), 잎담배, 솔비톨, 생모피, 실크웨이스트, 아마웨이스트
4년 관세철폐	108 (8.3)	절화(기타), 구아바, 망고(신선), 기타채소류, 밀, 메슬린(기타), 전분(감자), 호프(엑스), 충전용식물성재료, 대두유(조유), 면실유(조유), 과일, 견과류(조제처리), 기타 주스류, 양모
9년 관세철폐	196 (15.0)	밀크와 크림(미농축/무가당), 분유기타, 요구르트(기타), 치즈류, 상추(신선/기타), 샐러리(기타), 아보카도, 구와바, 망고(기타), 레몬, 라임, 파파야, 딸기,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 않은 것), 밀(듀럼종), 벼, 찹쌀, 찰현미, 쇠미, 기타 초콜릿(조제처리), 조제식료품(유아용), 토마토(조제), 올리브(조제저장), 감귤류(조제), 포도주스(기타), 혼합주스(기타), 동물사료조제품, 잎담배(주맥제거/비가공), 시가, 면, 면웨이스트
기존의 무관세 품목	271 (20.8)	말(번식용), 종유, 종돈, 돼지(도체/신선), 쇠고기(기타), 당근(기타), 밥, 체리, 배, 녹차, 후추, 생강, 호밀, 귀리, 메밀, 펠리트(밀), 대두, 참깨, 종자(기타), 담배부산물, 기타정유, 원피, 생사, 아마웨이스트
14년 관세철폐	20 (1.5)	배추(기타), 오이(신선), 가지(신선/기타), 아스파라거스(신선), 양파(건조), 기타채소혼합물, 멜론(신선), 땅콩(탈각/미탈각), 오렌지주스, 조제식료품(기타), 비알콜음료(과일/채소주스제외/기타)
TRQ 조건부 9년 관세철폐	7 (0.5)	토마토(신선/냉장), 양파샬롯(신선/냉장), 가지(신선/냉장), 고추류(신선/냉장/기타), 기타채소류(신선/냉장)
설탕 및 관련제품 특별 취급(일정 조건하 14년 관세철폐)	16 (1.2)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정제당, 당류(기타), 코코아분말(당류첨가/기타)
합 계	1,303 (100.0)	

주: HS 8 단위 기준이며, ()는 비중을 나타냄.

관세철폐 기간은 <표 1>과 같은 기준임.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부표 2. NAFTA에서 멕시코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 유형	품목 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관세철폐	433 (41.6)	산 동물(말, 당나귀 등), 벌꿀, 인모, 동물 털(기타), 식물의 뿌리, 토마토,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아스파라거스, 코코넛, 오렌지, 레몬, 딸기, 커피(카페인 미제거), 호밀
4년 관세철폐	92 (8.8)	기타 육류, 스위트 콘(냉동), 자두, 기타과일(신선), 살구(건조), 카나리시드
9년 관세철폐	299 (28.8)	면양고기, 포도, 복숭아, 커피(볶은 것, 카페인제거), 밀(듀럼종), 메슬린, 벼, 밀가루, 옥수수 가루, 곡물가루(기타), 동물성 유지(기타동물), 대두유(조유)
무관세 품목	89 (8.6)	쇠고기, 장미(기타), 이끼(기타), 대두, 해마라기씨, 면실, 기타 씨, 호프(엑스)
TRQ 조건부 9년 철폐	16 (1.5)	돼지, 돼지고기, 감자(냉동), 사과
4%씩 6년간 감축 (1994-1999) 나머지 76% 2003년까지 감축	10 (1.0)	오리, 거위 설육(기타), 감자(신선), 보리(기타), 맥아(기타), 돈지, 기타 동물성 유지 및 분획물
4%씩 6년간 감축 (1994~1999). 나머지 76% 2008년까지 감축	2 (0.2)	강낭콩(기타), 옥수수(기타)
관세철폐 제외	74 (7.1)	닭, 닭고기(기타), 가금육(기타), 소시지(기타), 기타 동물 간장, 우유(미농축, 미첨가), 분유(기타), 요구르트, 버터, 치즈, 계란(기타), 아이스크림, 조제식료품(기타), 카제인
1994년 20% 감축, 1996-2000년 매년 10% 감축, 나머지 30% 2001년 감축	1 (0.1)	맥주(기타, 몰트)
1997년 20% 감축, 1998년 10% 감축, 나머지 70% 1999년 감축	2 (0.2)	닭 기타설육(냉동),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설탕 및 관련제품 (쿼터제공 등 일정 조건하 15년 감축)	15 (1.4)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정제당, 당류(기타), 코코아분말(기타)
수입 금지 품목	7 (0.7)	양귀비씨, 기타식물, 아편
합 계	1,040 (100)	

주: HS 8 단위 기준이며,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부표 3.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668 (42.1)	염소, 닭, 칠면조, 식용설육(소 등), 인모(미가공), 튜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감자(종자용·기타), 토마토, 양파·쪽파·마늘, 상추 및 치커리, 당근, 무, 오이류, 채두류, 버섯(건조), 두류(종자용), 렌즈콩, 구아바, 망고, 오렌지, 만다린, 레몬, 라임, 건포도, 키위, 두리안, 감귤류, 무화과, 파인애플, 딸기, 파파야, 파프리카, 타임 및 월계수의 잎, 밀, 보리, 옥수수(기타), 쌀, 수수, 밀리트, 카나리시드, 기타곡물,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곡분(호밀·옥수수·쌀),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기타가공곡물,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 맥아(볶음불문), 전분과 이눌린, 사료용 밀의 글루텐, 유채, 아마인,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면화·양귀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사료용 식물의 종자(페스큐·티모디그래스 제외), 채소종자(파슬리·기타), 호프와 루폴린, 돈지,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코코아버터,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등
3년 철폐	157 (9.9)	카사바, 양, 견과류(탈각, 미탈각), 파파야, 살구, 기타곡분, 건조한 채두류, 해바라기씨 조유, 기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의 조제품 등
9년 철폐	107 (6.7)	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 구상의 양영경귀, 대두조유,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 균질화한 채소, 혼합 주스 등
무관세 적용	375 (23.6)	종우, 종돈, 기타포유동물, 마모와 그 웨이스트, 뼈와 혼코어,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밤, 사과, 체리, 키위, 마테, 정향, 육두구, 소두구, 샤프란, 카레, 호밀, 귀리, 옥수수(종자용), 메밀, 메밀가루, 카사바전분, 기타전분, 대두(파쇄불문), 해바라기씨,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면화·양귀비 제외), 사탕무 종자, 사료용 식물의 종자(페스큐·티모디그래스), 채소종자(꽃양배추·양파 등), 팜유와 그 분획물, 코코넛유과 그 분획물, 코코아두, 빵,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등
17년 철폐	98 (6.2)	밀크와 크림, 아스파라거스, 기타 밀의 글루텐, 땅콩유와 그 분획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과실주스 등
관세 인하 예외 품목	182 (11.5)	가당연유, 버터, 탈지분유, 기타치즈, 당류, 코코아 분말,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조제식료품, 담배류 등
계	1,587 (100)	

주: HS 8 단위 기준이며,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국-호주 FTA 협정문, 2004(<http://www.ustr.gov>).

부표 4.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쿼터 양허 유형

유형	쿼터 제공 품목의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감축(철폐) 방식
A	협정 발효 시 쿼터 내 물량 무관세
F	18년간 균등 감축; 17년 철폐
G	협정발효 후 6년간 관세 감축유예, 7년차에 기본세율에서 5.6% 인하 후, 12년차까지 연차적으로 5.6%관세인하, 13~17년차까지 11.1%관세인하; 17년 철폐
H	협정발효 후 1~8년 관세 감축유예, 9~13년 차 6.7%인하, 14~17년 차 13.3% 인하; 17년 철폐
I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없이 기본세율이 계속적용, 즉 관세 인하 예외품목,
	17년차까지 쿼터량 매년3%증가,
	17년차까지 쿼터량 매년4%증가,
	17년차까지 쿼터량 매년5%증가,
포도주	1~7년 차 관세유예, 8년 차 7.7%인하, 9년차35.9%인하, 10년 차 64.1%인하, 10년 철폐
	1~10년 관세유예; 10년 철폐
	1~7년 관세유예, 8년 2.7%인하, 9년 32.4%인하, 10년 62.2%인하; 10년 철폐
	1~9년 관세유예, 10년 41.7%인하; 10년 철폐
	1~년 관세유예, 10년 33.3%인하; 10년 철폐
	1~10년 연차적 관세 인하; 10년 철폐

자료: 미국-호주 FTA 협정문, 2004(<http://www.ustr.gov>).

부표 5.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의 쿼터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17년 철폐	19 (9.0)	기타 치즈, 땅콩,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기타 조제 담배, 면과 면웨이스트 등
6년 관세유예 17년 철폐	2 (0.9)	아보카도(a : 2월1일~9월15일, b : 9월16일~1월31일)
8년 관세유예 17년 철폐	20 (9.4)	쇠고기(신선, 냉동/ 뼈없는 것, 뼈있는것)
관세 인하여 예외품목	160 (75.5)	낙농품류(밀크와 크림, 버터), 치즈와 커드, 감미료 첨가하지 아니한 전지분유, 기타 버터밀크, 기타 유장, 기타 치즈, 신선 치즈, 커드, 가공치즈, 블루바인 치즈, 기타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 첨가하지 아니한 것, 기타),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 동식물성 유지, 기타 설탕 과자, 기타 조제식료품(초코렛, 코코아 함유), 물(감미, 향미 첨가) 등
포도주	11 (5.2)	발포성 포도주, 흰 포도주, 기타 포도즙 등
계	212 (100)	

주: HS 8 단위 기준이며,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국-호주 FTA 협정문, 2004(<http://www.ustr.gov>).

부표 6. 미국·칠레 FTA에서 미국의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 유형	품목 수 (비중,%)	주요 품목
A	921 (53.2)	닭, 칠면조, 오리,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이분체), 쇠고기(냉동/도체와이분체), 닭고기(신선/미절단/냉장/냉동), 요구르트(건조), 변성유장, 연유, 밀크와 크림(농축/미농축), 치즈, 치커리, 토마토, 양파, 마늘, 양배추, 상치, 당근, 오이, 완두, 아스파라거스, 가지, 호박, 올리브(건조), 카사바, 고구마, 파인애플, 감귤, 포도, 수박, 파파야, 배, 살구, 복숭아, 자두, 딸기, 바나나(냉동), 파인애플(냉동), 망고(냉동), 멜론(냉동), 보리, 옥수수, 밀가루, 면실, 땅콩, 사탕무, 사탕수수, 사탕무당, 사탕수수당, 초콜릿, 옥수수유, 소시지, 양파(조제저장), 딸기잼, 블루베리(조제저장), 밤(조제저장), 망고(조제저장), 만다린(조제저장), 토마토케첩, 아이스크림, 토마토 주스 등
B	96 (5.5)	칠면조육(미절단/냉동), 치즈(가공), 감자, 토마토(건조), 버섯(건조), 아몬드, 호두, 오렌지, 만다린, 자몽, 감자 전분, 마가린(액상제외), 고추(조제저장), 사과(조제저장), 초콜릿 밀크 음료 등
C	69 (4.0)	요구르트, 발효우유, 난황(건조),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시금치, 레몬, 포도(건조), 파파야(냉동), 면실유, 올리브(조제저장), 딸기(조제저장), 아보카도우(조제저장), 버찌(조제저장), 일담배 등
D	30 (1.7)	치즈(가공), 버섯, 자몽(건조), 수박, 복숭아잼, 자몽주스, 감귤주스
E	98 (5.7)	당근, 샐러리, 사탕옥수수, 대추야자(건조), 땅콩, 대두유(조유), 땅콩유(조유), 오렌지펠프, 오렌지주스, 주스, 감귤 주스, 피넛버터
F	369 (21.3)	종마, 종우, 종돈, 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 소 식용설육(신선/냉장/냉동), 돼지 식용설육(신선/냉장), 코코넛(신선/건조), 브라질넛(신선/건조), 밤(신선/건조), 바나나(건조),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키위, 커피, 녹차, 홍차, 호밀, 귀리, 메밀, 전분(메니옥), 대두, 참깨, 타피오카, 일담배, 사과 주스, 배주스 등
G	25 (1.4)	마늘(건조), 양파, 아보카도(신선/건조), 토마토, 아스파라거스(조제저장), 배(조제저장), 복숭아(조제저장) 등
H	4 (0.2)	가금 식용설육(신선/냉장/냉동), 칠면조 식용설육(신선/냉장/냉동)
J	118 (6.8)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 버터, 치즈, 기타 낙농제품, 정제당, 초콜릿, 코코아 조제품, 유아용 조제품, 아이스크림, 동물 사료 등
합계	1,730 (100.0)	

주: HS 8 단위 기준이며,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문, 2003(<http://www.ustr.gov>).

부표 7. 미국·칠레 FTA에서 칠레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A	509 (64.9)	번식용말, 종우, 종돈, 닭, 돼지고기(신선/냉장/도체와이분도체), 면양(신선/냉장/도체와이분도체), 면양(냉동/도체와이분도체), 소식용설육(간장/냉동), 돼지식용설육(신선/냉장), 돼지와가금비계,천연꿀,인모,마모및그웨이스트, 장미, 마늘(신선/냉장), 방울다다기양배추(신선/냉장),치커리(신선/냉장), 버섯(신선/냉장), 시금치(신선/냉장), 오이(일시저장처리), 당근(건조),녹두(종자용), 팥(종자용),코코넛(신선/건조), 브라질넛(신선/건조), 캐슈넛(신선/건조), 아몬드(신선/건조), 헤이즐넛(신선/건조), 호두(신선/건조), 밤(신선/건조),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오렌지(신선/건조), 맨더린, 레몬(신선/건조), 감귤(신선/건조), 사과(신선), 살구(신선), 키위(신선), 딸기(냉동), 딸기(일시저장처리), 살구(건조), 사과(건조), 커피, 후추, 마테, 육두구, 소두구, 커민씨, 생강, 심황, 옥수수(종자용), 수수, 메밀, 기장, 전분(매니옥), 과당, 코코아버터, 귀리빵, 오이(조제저장), 양파(조제저장), 버섯(조제저장), 딸기잼, 딸기(조제저장), 오렌지쥬스(냉동), 토마토쥬스, 간장, 맥주 등
B	66 (8.4)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이분도체), 쇠고기(신선/냉장/뼈채절단), 쇠고기(냉동/도체와이분도체), 쇠고기(냉동/뼈채절단), 소식용설육(신선/냉장), 닭고기(신선/미절단/냉장), 닭고기(미절단/냉동), 요구르트, 종자용감자(신선/냉장), 감자(냉동), 분쇄물및조분(옥수수), 전분(옥수수), 전분(감자), 쿠우스쿠우스, 텍스트린과기타변성전분 등
C	66 (8.4)	밀크와크림(미농축), 밀크와크림(농축), 스위트콘(냉동), 호밀, 귀리, 참깨, 겨자씨, 잇꽃씨, 기타식물성점질물, 칠면조간장(조제저장), 닭간장(조제저장), 채소혼합물(조제저장), 완두(조제저장) 등
E	54 (6.9)	오리/거위/기니아(신선/냉장/미절단), 오리/거위/기니아(냉동/미절단), 조란(신선), 난황(건조), 벼, 쇠미, 쌀가루, 분쇄물및조분(밀), 분쇄물및조분(귀리), 펠리트(밀), 압착플레이크(보리), 가공곡물(보리), 호프(신선/건조),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건조), 마아가린(액상제외) 등
G	74 (9.4)	밀또는메슬린가루, 낙화생유(조유), 팜유(조유), 면실유(조유), 면실유(정제유), 야자유(조유), 야자유(정제유), 옥수수유(조유), 팜핵또는바바수유(조유), 과당, 포도즙 등
H	4 (0.5)	닭 기타설육(신선/냉장), 닭기타설육(냉동), 칠면조 기타설육(신선/냉장), 칠면조기타설육(냉동) 등
O	6 (0.8)	옥수수기타, 위스키, 럼주, 보드카, 리큐르 등
V	5 (0.6)	발포성포도주, 적포도주, 백포도주, 기타포도주 등
합계	784 (100)	

주: HS 8 단위 기준이며,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문, 2003(<http://www.ustr.gov>).